



|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        | 1.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<br>2.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·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처리기간<br><br>20일<br>(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·군수 또는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) | 수수료<br><br>없음 |
| 시장·군수·구청장<br>확인사항 | 토지 또는 건물(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의 등기사항증명서  |  |               |

**처 리 절 차**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